

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0-86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. 8. 12.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16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1)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으로 이용 청년의 만족도 제고
- 2)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

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부터 ~ 2022.12.31.
- 2) 위탁운영 시설 현황
 - 시설명 : 서울청년센터 마포
 - 위 치 :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(합정동) 마포한강푸르지오 지상1층 제P101호
 - 면 적 : 270.8㎡ ⇨ 공유면적(96㎡) 제외
 - 운영인력 : 6명(상담, 정책전달, 프로그램 운영, 공간운영, 운영지원 등)
- 3) 위탁사무 범위 : 서울청년센터 마포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- 4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5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다. 추진일정

- 1) 공간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 : 2020. 7 ~ 10.
- 2) 민간위탁심의(구의회) : 2020. 9월 중
- 3) 민간위탁업체 공모 및 선정 : 2020. 9. ~ 10.
- 4) 시범운영 : 2020. 11월 중
- 5) 개관 : 2020. 12월 중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>

제16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붙임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 1부.

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(2020년 기준)

□ 소요예산 : 453,438천원(전액 시비)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금액 | | 세부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계 | 소계 | | |
| 시설비및부대비 (리모델링비) | | 225,555 | ○ 서울청년센터 마포 시설비 및 부대비 | |
| 자산취득비 | | 90,000 | ○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| |
| 민간위탁금 | 453,438 | 137,883 | <인건비, 사업비, 운영비 등> ○ 센터장(5급) 3,565천원×1명×3개월 ⇒ 10,695천원 ○ 매니저(7급) 2,746천원×5명×3개월 ⇒ 41,196천원 ○ 기본급 외 급여 38,107천원 ○ 홍보비, 사업비 및 활동비 등 47,885천원 | 센터장, 매니저 10호봉 적용 (운영:3개월) |
| 합계 | | 453,438 | | |

※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·운영 계획(서울시 청년청-799호, 2020.1.17.)에 따라 인건비, 사업비, 운영비 등 전액 시비 지원